

『新式儒胥必知』 고찰*

A Study on Sinsik Yuseopilji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新式儒胥必知』의 내용과 의의 |
| 2. 간행 배경 | 5. 결 언 |
| 3. 『儒胥必知』와
『新式儒胥必知』의 비교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전문도서편찬자인 黃泌秀에 의해 1901년(광무 5, 고종 38)에 편찬, 간행된 『新式儒胥必知』의 출판문화사 및 기록학적 가치를 규명하였다. 갑오개혁(1894)과 을미개혁(1895) 이후 사회변화에 따라 문서형식도 변화하였다. 따라서 각 지방의 행정관이나 서리, 선비 및 일반 백성들은 문서 작성 시 해당 안전에 맞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매뉴얼과 같은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황필수는 새로운 문서작성 요령을 기존의 『儒胥必知』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新式儒胥必知』를 편찬, 간행하였다. 이 책은 특히 『儒胥必知』의 民刑訴訟, 請願書 부분은 대폭 수정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에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이에 대한 認許狀과 같은 새로운 문서 양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서필지』에는 없던 十三道等級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영하였음을 보여준다. 황필수는 이 책에 소송 관련 문서를 제시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일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의학서를 비롯한 다수의 도서를 저술, 편찬한 인물이라는 점으로 보아 계몽의식의 발로라고도 생각된다. 『신식유서필지』의 서술방식은 대부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구태의연한 표현을 삽입하여 문서를 작성했던 『유서필지』와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이후 그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정·보완되고, 또 여러 차례 교정과정을 거쳤던 『유서필지』와 대조적으로 황필수라는 한 사람의 출판 의식과 역량으로 인해 완성된 『신식유서필지』 간행은 조선 후기의 출판문화사 및 기록학적 차원에서 보아도 주목할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要語: 『新式儒胥必知』, 黃泌秀, 『儒胥必知』, 문서작성형식, 조선후기

* 201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5년 9월 5일 최종심사일: 2015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The paper investigates on the history of the publishing culture of *Sinsik Yuseopilji* and its archival value which was compiled and published by a compilation expert, Hwang Pilsu, in 1901 (Gwangmu 22 years, Gojong 38 years). After the Gabo Reform of 1894 and the Eulmi reform of 1895, the form of documents was by and large changed because of the drastic social changes. So, scholars, public administrators or official deputies as well as ordinary people came to need references such as manuals required to prepare a document conforming to corresponding items. Hwang Pilsu, then, compiled and published the book, *Sinsik Yuseopilji* to show people how to prepare documents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newly changed methods. On the basis of an existing book, *Yuseopilji*, he revised and added several parts.

The updated version especially modified the existing section of civil and criminal suits. And it suggested new forms of petition and permit, when people asked for permission of government to establish a company. In addition, adding an article like 'A System of Thirteen Grade' that wasn't included in *Yuseopilji*, the book seems to have rapidly reflected the changes of the turbulent times.

He also proposed some documents related to litigation and mentioned in detail the things to bear in mind during litigation processes. Given that he published lots of books including medical ones, he seems to have been one of the Enlightenment advocates.

Sinsik Yuseopilji introduces easy and simple ways of description in accordance with five Ws and one H, which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Yuseopilji* full of fixed formalities and outdated expressions. While the latter had been published by one person and then was revised so many times by other people, the former was completed by only one person's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In that sense, it is a remarkable event in the aspect of the history of publishing culture and archival studie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Sinsik Yuseopilji*, Hwang Pilsu, *Yuseopilji*, late Joseon dynasty

1. 서 언

도서의 출판은 한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대변한다. 시대는 변화를 계속하며, 그 변화의 양상이 도서에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근대화의 풍조가 갑오개혁(1894)을 기점으로 급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이후에 간행된 도서 중에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新式儒胥必知』는 이 시기의 출판문화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서라고 할 수 있다. 『儒胥必知』는 각 지방의 행정관이나 서리, 선비, 일반 백성들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형식을 제시한 책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자 문서의 형식이 변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서 형식을 제시한 것이 본고의 연구 대상인 『신식유서필지』이다.

『유서필지』는 편찬자가 불분명하고 편찬 년대도 확실하지 않으나 『신식유서필지』는 黃泌秀(1842~1914)라는 전문 도서편찬자로서의 의식이 분명한 편찬자가 있고, 1901년(광무 5, 고종 38)이라고 편찬 년대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황필수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金鍾天의 논문¹⁾이 있을 뿐이다. 김중천은 황필수가 편찬한 11종의 도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시기의 중요한 전문편집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도서 해제의 정도로 간략한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황필수의 전문편찬자로서의 의식이나 학문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가 점유하고 있는 위상 및 의의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는 대부분 『儒胥必知』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져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서지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에 실려 있는 吏讀를 대상으로 국어학적 차원에서 고찰한 것이다. 洪淳赫은 맨 처음 이 책의 판본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했다.²⁾ 김봉좌는 현재까

1) 김중천,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6), 275-288. 한국서지학회.

지 수집할 수 있는 판본을 모두 모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간행의 경위와 각 판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³⁾ 그리고 조선후기의 출판사와 문화사까지 논의를 확대한 전경목의 논문⁴⁾이 있다. 이두에 관한 논문으로는 강진섭,⁵⁾ 최범훈,⁶⁾ 김영만,⁷⁾ 박형익⁸⁾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신식유서필지』의 간행 배경 및 내용을 검토하여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가 갖고 있는 위상을 확인하고, 이 책의 출판 문화사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황필수의 편찬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2. 간행 배경

황필수는 이 책의 서문격인 『小引』에서 이 책을 편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갑오개혁 이후로부터 문자의 체제가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하여 이전에 귀감으로 삼던 것이 이 시기에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지금의 선비나 아전들은 옛 일을 잘 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아는 자들을 비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신식유서필지』를 편찬하여 새로운 법식에 대비한다.⁹⁾

위의 내용에 편찬의도와 간행 배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갑오개혁은 다음해에

2) 홍순혁, “儒胥必知 小考(1),” 『한글』 제11권 3호(1946. 7), 189-195.

홍순혁, “儒胥必知 小考(2),” 『한글』 제12권 1호(1947. 3), 426-434.

3) 김봉좌, “유서필지 판본 연구,” 『書誌學報』 제29호(2005), 137-160.

4) 전경목, “19세기 儒胥必知 編刊의 특징과 의의,” 『藏書閣』 제15집(2006).

5) 강진섭, “儒胥必知에 대하여,” 『國語學』 제27호(1972. 10), 13-26.

6) 최범훈, “儒胥必知攷,” 『세국어교육』 18권 1호(1974), 152-166.

7) 김영만, “儒胥必知之 吏讀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 1980).

8) 박형익, “儒胥必知之 吏讀彙編,” 『한국어학』 제20집(2003), 313-326. 한국어학회.

9) 『新式儒胥必知』 『新式儒胥必知小引』.

“一自更張以後 文字體制 亦隨而變 以若前日之龜鑑 便爲此時之弁髦 然則爲今日之儒胥者 又不可以長於溫故 有不得以非其知新者 於是乎彙成一編 以備新式.”

있었던 을미개혁(1895)과 더불어 조선 사회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근대화를 지향하던 사회적 현상이었다. 본고의 내용에 국한하여 살펴볼 때, 이전부터 있었던 국가를 상대로 한 문서 작성의 요령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나 변화가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 책이 간행된 것이다.

황필수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이전의 『유서필지』의 체제 중에서 그대로 답습할 것은 답습하였고, 새롭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였다.

上言과 原情은 모두 임금에게 고하는 글이므로 격식을 옛 그대로 따랐다. 그중 에 조금 다른 것은 임금의 존호를 더한 것과 우리나라의 연호로 년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전 그대로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所志나 議送 등의 문서 형식은 옛 방식이 갑자기 바뀌었으니 지금 취하면서 의지할 것이 없다. 따라서 유형별로 새로운 것을 따라 모두 아래에 나열한다.¹⁰⁾

所志는 일반 백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청원, 진정 등의 내용을 해당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議送은 1차 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재차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황필수는 상언이나 원정과 같이 문서의 형식을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답습하고, 소지나 의송은 새로운 문서 형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하는 민사와 형사의 소송에 관한 규정을 뽑아 놓은 것이다. 개국 504년(1895) 을미 4월 19일의 법무 훈령 제3호가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올리는 소장이나 소답서는 아래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옳다.¹¹⁾

이 부분은 황필수가 『유서필지』와는 다른 문서 형식을 제시하는 첫머리에 쓴 것이다. 개국 504년은 서력 1895년으로 이 해 4월 19일은 을미개혁이 단행된

10) 『新式儒胥必知』.

“上言與原情 俱是告君文字 而格式依舊 其少異者 尊號之加隆也 紀年之以本國年號者是也 不得序仍其舊 若所志議送等文體 舊式頓變 今無所取資 故隨類從新 俱列如左.”

11) 『新式儒胥必知』.

“以下는 民刑訴訟에 關한 規程을 抄出함이라 開國五百四十七未四月十九日 法部令第三號 原告人或被告人이 呈하는 訴狀或訴答書는 左에 准하여 作함이 可함.”

날이다. 이때 법부에서 제3호 훈령을 하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소송할 경우,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황필수는 새로운 소장의 형식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

황필수가 『신식유서필지』를 편찬한 것은 1901년이다. 이 책에는 十三道等級이라는 항목이 실려 있는데, 1896년(고종 33)에 함경, 평안, 충청, 전라, 경상도가 각각 남북으로 나뉘어 8도가 13도로 개편되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황필수는 5년 뒤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를 제작한 것이다. 이처럼 황필수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이후에 바뀐 문서의 작성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하고 간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문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각종 편찬서를 총체적으로 고찰한 뒤에 결론적으로 할 말이지만, 황필수는 당시 민중들을 대상으로 계몽적 차원에서 도서의 편찬에 노력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3. 『儒胥必知』와 『新式儒胥必知』의 비교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서필지』를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어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서책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용의 같고 다른 부분을 <표 1>로 정리하였다.

< 표 1 > 『儒胥必知』와 『新式儒胥必知』의 체재 비교

儒胥必知			新式儒胥必知		
目錄		본문 중 제목(표기)이 다른 것 儒胥必知卷之全凡例 (본문수록)	新式儒胥必知小引 光武5年(1901)5月31日慎村子述		
上言			上言		
	孝子旌閭			孝子旌閭	
	忠臣旌閭			忠臣旌閭	
	烈女旌門			烈女旌門	
	孝子贈職			孝子贈職	
	忠臣贈職			忠臣贈職	
	學行贈職			學行贈職	
	以上士林上言			以上士林上言	
	子孫爲祖先孝行旌閭上言	子孫爲祖先孝行旌閭上言		祖先孝行旌閭	子孫爲祖先孝行旌閭上言
	子孫爲祖先忠臣旌閭上言	子孫爲祖先忠臣旌閭上言		祖先忠臣旌閭	子孫爲祖先忠臣旌閭上言
	子孫爲先世烈女旌門上言			先烈世女旌門	子孫爲先世烈女旌門上言
	子孫爲孝行贈職上言			祖先孝行贈職	子孫爲祖先孝行贈職上言
	子孫爲忠節贈職上言			忠節贈職	子孫爲忠節贈職上言
	子孫爲學行贈職上言			學行贈職	子孫爲學行贈職上言
	以上士林上言			以上士林上言	
擊錚原情	爲先雪冤事擊錚原情			擊錚原情	爲先雪冤事
	爲仲雪後復官爵事原情	爲仲雪後復官爵事原情		仲雪後請復官爵事	爲先世雪冤擊錚原情
	以族人之子立后原情	以族人之子立后事原情		以族人子立後事	爲仲雪後復官爵事原情
	山訟原情	爲先塋山訟事原情		山訟事	以族人之子立后事原情
所志類	士夫以山訟事親呈單子(并題辭)			訴狀	爲先塋山訟事原情
					民刑訴訟(新式) 前日所志議送單子一以新式改定

		圖形後題辭			訴答		
		親審後題辭			委任書		
		待本官遞(遞)歸親呈營門單子(并題)			告訴狀		
		以奴名爲山訟事所志(并題)			告發狀		
		掘移侂音			私訴狀		
		常人與僭類山訟所志(并題)			上訴書		
		隻原情		請願書	率養時兩家及門 長禮斜請	率養時兩家請願書 及門長請願書式	
		元告原情			營業請願	營業請願書式	
		原情題辭			認許狀		
					公用信紙式		봉투 그림
		債訟所志(并題)		章程 規則	公文類例	公文類例及式樣	법제 성격 25b- 26b
		隻原情			照會式		
		寬限題辭			照覆式		
		外邑人有班脉者頗役所志(并題)			通牒式		
		士夫家單墓直頗役所志(并題)			請願書式		
		還上抄戶圖免所志(并題)			指令式		
		牧府使都(道)吏輩受由所志(并題)			告示式		
		折脚所志(并題)			報告書式 (付別紙)		
		爲親患用全牛膏所志(并題)			質稟書式		
		負役年老子代所志(并題)			訓令式		
		家券逢賊後立旨		十三道 等級	京畿道		
		田畚文券失火後立旨			忠清南道		
		權買田畚不許還退所志(并題)			忠清北道		
		毆打所志(并題)			全羅南道		
					全羅北道		
					慶尙南道		
					慶尙北道		
					黃海道		
					平安南道		
					平安北道		
					江原道		
					咸鏡南道咸鏡北 道		

『新式儒胥必知』 고찰

單子類	支孫封宗家祭需單子		祭需單子	支孫封宗家祭需單子	單子類12)
	賻儀單子		賻儀單子		
	吏輩及門下人賻儀單子		門下人賻儀單子	吏輩及門下人賻儀單子	
告目類	各司書吏公故時告目		問安告目		告目類13)
	吏輩問安告目(付答牌)		歲時告目(并付答牌)		
	吏輩歲時間安告目(付答牌)				
	外邑吏以房任干請事告目				
文券類	家舍文券	文券類	官契家券	제목없음	
	田畓文券		立旨家券	立旨式	
	奴婢文券		畓券		
	山地文券		奴婢券	奴婢文券	
			債券	債用文券	
			山地券	山地文券	
通文套		通文套			
부록	吏讀彙編				
	報狀式				
	書日式				
	重囚同推式				
	決訟立案式				
	買得斜出式				
	移關下帖式				

<표 2> 표현이 다른 용어

儒胥必知			新式儒胥必知		
편명	용어		편명	용어	
史林上言 중 旌閭, 旌門	大國年號 月 日		史林上言 중 旌閭, 旌門	大年號 月 日	
	殿下			陛下	
史林上言 중 學行贈職	大國年號	증직 중 학행증직만 대국연호를 씀	史林上言 중 贈職 (孝子·忠臣·學行)	年號	

12) 본문에는 류 구분없이 단자종류를 직접 나열.

13) 본문에는 류 구분없이 고목종류를 직접 나열.

儒胥必知			新式儒胥必知		
편명	용 어		편명	용 어	
史林上言 중 孝子·忠臣贈職, 子孫上言, 擊錚原情	年號		子孫上言, 擊錚原情	年號	
單子類, 告目類	年		單子類, 告目類	年	
			民刑訴訟, 請願書, 章程規則	光武	신식유서필지 에만 있는 것
文券類	大國年號幾年 (甲子)(앞부분) 月 日		文券類 중 官契家券, 立旨家券	光武(끝부분)	
			文券類 중 番券, 奴婢券, 債券, 山地文券	年號幾年 (甲子) 월 일(첫머리)	
通文套 중 通文	년 (끝부분)		通文套 중 通文	年號幾年 월 일(끝부분)	

3.1 답습한 경우

『신식유서필지』는 上言과 擊錚原情의 문서 형식은 『유서필지』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상언은 자손들이 군주에게 조상의 旌閭나 贈職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격쟁원정은 군주가 행차할 때 군주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징을 쳐서 하소연’할 때 올리는 문서이므로 이 또한 전통적으로 격식을 갖춘 문서가 필요하였으므로 바꿀 것이 없다. 격쟁원정의 내용은 소상의 원통함을 해결하는 일, 관작의 복구를 요청하는 일, 친척으로 後事를 세우는 일, 山訟의 일 등이다.

單子和 告目的 경우도 한 두 개의 양식이 누락되었거나 표현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기는 하지만 『유서필지』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文券과 通文의 경우도 이와 같다.

3.2 새로운 문서 양식

이 책에는 『유서필지』에는 없는 民刑訴訟, 請願書, 章程規則, 十三道等級 등의 항목이 새로 첨가되어 있다. 민형소송이라는 제하에 ‘신식이다. 이전의 소지와 의송의 단자를 한결같이 신식으로 개정한다.’¹⁴⁾라고 小字로 해설이 달려 있다. 이 항목은 다시 訴狀, 訴答, 委任書, 告訴狀, 告發狀, 私訴狀, 上訴書 등의 소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서필지』의 소지류에는 ‘사대주가 산송의 일로 직접 올리는 단자’를 비롯한 16항목이 수록되어 있는데 비해 내용이나 형식의 차이가 많은데, 『신식유서필지』에서는 비교적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청원서에는 양자를 들일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¹⁵⁾의 양식과, 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예로 구분되어 있다.¹⁶⁾ 그리고 회사의 설립을 청원하는 요청에 대한 認許狀도 수록하고 있다. 장정규칙은 公文類例, 照會式, 照覆式, 通牒式, 請願書, 指令式, 告示式, 報告書式 附別紙, 質稟書式, 訓令式 등의 소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문유례는 여러 공문을 작성하는 요령을 범례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십삼도등급은 각 도의 郡에 대한 등급을 나누어 놓은 항목이다.

주목되는 사항은 『유서필지』의 부록인 ‘吏讀彙編’을 비롯한 6개의 서식¹⁷⁾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서필지』의 이두회편은 이두를 어휘별로 분류한 것으로 이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데, 수록하지 않았다. 항필수는 이두에 관해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답습하는 문서에 이두가 부기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전재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지, 자신이 신식으로 정리한 항목에서는 이두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서의 양식에는 이두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의식을 알 수 있다.

14) 『新式儒胥必知』.

“新式○前日 所志議送單子 一以新式改定.”

15) 목차에는 ‘率養時兩家及門長禮斜請’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에는 ‘率養時兩家及門長請願書’로 표기되어 있다.

16) 이후 편의상 청원서1과 청원서2로 표기한다.

17) 報狀式, 書目式, 重因同推式, 決訟立案式, 買得斜出式, 移關下帖式 등이다.

4. 『新式儒胥必知』의 내용과 의의

여기에서는 『유서필지』에는 없고 『신식유서필지』에만 있는 문서의 양식, 혹은 이전과 크게 다른 양식의 변천이 있는 경우를 살피고자 한다. 크게 개인적인 문서와 공공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문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나 養子를 들일 때 혹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문서이고, 공공문서는 정부의 기관이나 지방의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황필수는 개인적인 문서를 먼저 제시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과 형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황필수는 十三道等級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당시 조선이 8도의 행정 체제에서 13도로 분리, 개편된 뒤에 각 도에 있는 郡의 등급을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편찬자는 관청의 서리나 개인이 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이 항목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4.1 개인 문서

4.1.1 訴狀

소장은 訴求와 事實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장

주소(아무 署, 아무 坊, 아무 契, 아무 道, 아무 邑, 아무 面) 직업

원고 성명 나이

주소 직업

피고 성명

소구

사실

광무 년 월 일

원고성명 인

모모 재판소장 성명 좌하(요즘에는 재판소장의 성명을 많이 쓰지 않는다.

아래도 이와 같다.¹⁸⁾)

訴求是 원고가 청구권을 소송하는 것으로 현대의 청구소송이다. 이에 대해 사실은 소송을 청구하게 된 구체적 내용을 말한다. 『신식유서필지』에 예문으로 실린 내용은 빚을 갚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내용인데, 『유서필지』의 항목 중 「債訟所志」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서필지』는 소구와 사실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있지 않다. 이러한 예는 소송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에는 ‘제음과 지령은 상황에 따라 작성하는데 한글을 섞은 제음은 소장 아래에 쓰고, 지령은 각 재판소의 공식 용지에 써서 소장에 첨부한다. 두 면이 이어지는 곳에 도장을 찍는다.’¹⁹⁾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4.1.2 訴答

소답은 공판의 첫 단계에서는 경합하는 양측이 자기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만나서 통상 간단하고 형식적으로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것도 訴答要旨와 事實의 소항목으로 되어 있다. 『유서필지』에 실려 있는 「雙原情」의 항목과 유사하다. 문서의 형식은 소장과 같다.

소답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미성년은 바로 20세 이하이니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소송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척 중에서 성년으로 대신 소송하게 함이 옳다.
소송인이 스스로 소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뒤에 소송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일을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에게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옳다.
대리인 위임장은 다음의 문서에 준하여 작성함이 옳다.²⁰⁾

18) 『新式儒胥必知』.
“近日則多不書裁判長姓名 下倣此.”

19) 『新式儒胥必知』.
“題辭與旨令 隨機爲之 而雜以國文題辭 書於訴狀下 旨令書於各其所公用信紙 付於訴狀 聯輻處捺印.”

20) 『新式儒胥必知』.
“未成年은 卽二十歲以下 | 니 護後人이 有 扨 境遇에는 護後人이오 護後人이 無 扨 境遇에는 親戚中成年者로 代訴 扨이 可 扨 訴訟人이 自己가 行치 扨는 境遇에는 裁判所의

위의 인용에서 밝힌 사항은 소송을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법 개혁의 일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예로 보인다.

4.1.3 委任書

위임서는 『유서필지』에는 없는 항목이다. 이것은 예전의 소송에서는 위임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지, 아니면 극히 소수의 예만 있었으므로 작성 요령에 수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항목의 다음에 소송의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송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 소송인은 법정 진술에 앞서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물을 바친다.
- 소담은 소장을 제출한 뒤 15일 이내에 바친다.
- 소송인은 판결서의 등사본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
- 원고나 피고는 상소할 수 있다.
- 상소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고소는 피해자가 하며, 고발은 관리나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하는데 문서의 작성은 다음의 양식에 준한다.
- 만약 문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거나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구두로 고소할 수 있다.

황필수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격식만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송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일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까지도 알리려는 의식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의 편찬서 중에서 의학서가 다수 있으며, 그 또한 의사로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황필수의 계몽의식이라고 확대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원고나 피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사실이다.

許可를 得은 後 其訴訟을 代人에게 委託하는 事를 得음 但代人에게는 委任狀을 交付함이 可함 代人委任狀은 左案에 准하여 作함이 可함.”

4.1.4 告訴狀・告發狀

고소장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고, 고발장은 관리나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발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두 문서의 형식은 같고 내용만 조금 다르다.

4.1.5 私訴狀

私訴는 범죄로 신체의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장물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公訴에 결들여서 공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문서의 형식은 고소장과 유사하다. 사소장의 경우, 2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4.1.6 請願書 1

이 청원서는 양자를 들일 때 生家와 養家, 집안 어른인 門長이 작성하는 문서 양식이다. 이 3종의 청원서는 같은 내용을 각자의 처지에서 서술하는 것이므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형식은 동일하다. 다만 양가나 생가의 부녀자가 청원할 경우에는 처음에 자신의 姓을 쓴 뒤에 남편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하였다. 문서의 수신자도 위의 각 문서는 ‘某某裁判所長’인데 이 문서는 ‘掌禮院卿’으로 되어 있다.

4.1.7 請願書 2

이 청원서의 문서 양식을 수록한 것은 『신식유서필지』의 편찬 이유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던 황필수의 의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 내용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니 이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인허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관청의 印札紙로 별도로 작성하고 大臣의 서명 아래에 관인을 찍으며 章程은 별지로 아래에 기록한다.²¹⁾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 章程規則인데, 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하나, 아무 사업이 이러이러하므로 회사 이름은 아무 회사라고 말할 일이다.

하나, 본 회사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둘 일이다.

하나, 사장 1인, 부사장 1인, 총무 2인, 사무원 몇 사람, 회계 1인, 書寫 몇 사람을 둘 일이다.(細則은 이와 같이 아래에 나열하여 쓴다.)²²⁾

관청에서 회사의 이름과 조직까지 정해주는 것이 특이하지만, 이는 당시의 형편과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황필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서의 양식을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4.2 公文類例及式樣

『신식유서필지』에서 공공문서의 양식을 설명한 것은 照會式, 照覆式, 通牒式, 請願書式, 指令式, 告示式, 報告書式 附別紙, 質稟書式, 訓令式 등 도합 9종이다. 각 문서의 양식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각 문서의 양식을 설명하기 전에 범례식으로 8조항의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그중에서 제7조항의 내용이 중요하다.

하나, 개국 503년(1894) 7월 9일 議案 제2조에 의하여 각종 공문서의 양식은 흰 종이로 印札板에 인쇄하되 해당 관청의 기호를 반드시 인출하여 경비

21) 『新式儒胥必知』.

“認許狀은 請願書按到 訖는 當該官聽印札紙로 另繕 訖고 大臣姓名下捺印官章 訖며 章程은 別紙로 開錄於下.”

22) 『新式儒胥必知』.

“一某事가 如何如何 訖기로 社名은 某會社라 稱 訖 事, 一本社에 任員은 如左이 置 訖 事, 一社長一人 副社長一人 總務二人 事務員幾人 會計一人 書寫幾人을 置 訖 事.”

를 줄이고 위조를 방지함이 옳다.²³⁾

갑오개혁이 실시되던 해에 기존 공문서의 개혁도 함께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안 제2조는 다음의 내용인데 『高宗實錄』에 실려 있다.

1. 중앙과 지방에서 왕래하는 문서는 따로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지면에 해당 부(府), 아문(衙門), 주(州), 현(縣)의 호기(號記)를 찍어서 일률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도록 한다.²⁴⁾

이 의안을 올린 부서는 軍國機務處였다. 이때 올린 의안은 총 4조인데 모두 법의 적용과 시행에 관한 것들이다. 주지하듯이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중에 중앙정부와 지방관청 간에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문서의 양식을 대폭 개정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의 실질적인 이유는 경비의 절감과 위조의 방지였다. 따라서 구식의 문서 양식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새로운 형식의 문서 작성 요령이 요구되었고, 황필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서의 양식을 제시한 것이다.

4.3 十三道等級

이 항목 역시 『유서필지』에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이 항목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문서 작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8도가 13도로 개편되었는데 이 제도는 1896년(建陽 원년) 8월 4일에 칙령 제36호²⁵⁾가 반포되면서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13도 339군을 5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이 항목에서도 각 군의 등급을 소자로 부기하였다.

23) 『新式儒胥必知』.

“開國五百三年七月初九日 議案第二條에 依호야 各樣公文紙本은 白紙로 印札紙에 印刷호대 當該官聽記號를 반드시 印出호야 費를 省호고 僞를 防호미 可호.”

24) 『高宗實錄』 권32, 甲午 7월 9일 條.

25) 『高宗實錄』 권34, 8월 4일 條.

기술 방식을 살펴보면, 각 도별로 군을 나열하였는데, 郡名 아래에 해당 군의 옛 이름을 소자로 부기하였으며, 서울에서 해당 군까지의 거리를 밝혀 놓았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관청의 문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에 80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시간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상세하게 실제 거리를 밝혀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남도의 예를 들어본다.

제주(탐라, 육지로 940리, 수로로 970리)

정의(홍로, 제주에서 140리)

대정(예래, 제주에서 120리)

이때까지도 제주도는 전라남도의 관할이었다. 耽羅는 제주의 옛 이름이었고, 서울에서 제주군까지의 거리를 육로와 해로로 나누어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던 旌義郡과 大靜郡은 서울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제주군과의 거리를 명시함으로써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4.4 특징 및 의의

『신식유서필지』는 『유서필지』의 원래 의도대로 관청의 하급관리들이나 일반 백성 중에서 국가를 상대로 작성해야할 문서가 있을 때, 일정한 격식을 갖춘 문서의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일의 편리를 도모하고 확실적인 업무의 처리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편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공식 문서의 작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전에는 없던 문서의 양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 책이 편찬되었으므로,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다.

『유서필지』는 1911년에도 간행되었다. 간행처는 兪州의 西溪書舖인데, 이전에 간행된 다른 판본과 비교하여 조금도 달라진 면이 없다.²⁶⁾ 이것은 이때까지도

26) 김봉좌(2005), 151.

『유서필지』에 실려 있는 구식의 문서 작성 요령에 대한 수요자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 책은 상업적 필요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단지 이전의 『유서필지』를 그대로 복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도서를 편찬한 황필수의 『신식유서필지』와는 도서의 출판 의식 차원에서 볼 때 비교할 수도 없다.

『유서필지』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이후 그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정·보완되고, 또 여러 차례 교정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⁷⁾ 그러나 황필수라는 한 사람의 출판 의식과 역량으로 인해 완성된 『신식유서필지』 간행은 조선 후기의 출판문화사적 차원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신식유서필지』는 대부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구태의연한 표현을 삼입하여 문서를 작성했던 구식과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다.

5. 결 언

『新式儒胥必知』는 黃泌秀에 의해 1901년(광무5, 고종38)에 편찬, 간행된 서책이다. 황필수는 이 책 외에도 10여 종의 도서를 저술, 편찬한 인물로서 이 시기의 주목되는 전문도서편찬자이다.

이전부터 각 지방의 행정관이나 서리, 선비 및 일반 백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문서를 올릴 일이 있을 경우에, 해당 안건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제시한 『儒胥必知』가 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1894)과 을미개혁(1895) 이후, 사회 전반에 형성된 변혁의 시류에 의해 이러한 문서의 작성에도 새로운 형식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 책이 편찬, 간행되었다.

이 책은 이전의 『유서필지』에서 上言, 原情, 單子, 告目, 文券, 通文 등은 그대로 답습하여 수정하지 않았다. 중점적으로 수정하거나 전혀 새로운 문서 양식을

27) 전경목(2006), 143.

제시한 것은 民刑訴訟, 請願書 등이다. 특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에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이에 대한 認許狀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책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이다.

十三道等級은 『유서필지』에는 없는 것이다. 1896년(建陽 원년)에 시행된 13도의 개편 이후 5년 뒤에 이 책이 편간되었다는 사실은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특히 서울에서 해당 군까지의 거리를 밝혀 놓았는데, 조선시대에 관청의 문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에 80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시간을 지키게 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필수가 『신식유서필지』를 편간하면서 소송 관련 문서를 제시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일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의학서를 비롯한 다수의 도서를 저술, 편찬한 인물이라는 점으로 보아 계몽의식의 발로라고도 생각된다.

『유서필지』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이후 그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정·보완되고, 또 여러 차례 교정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황필수라는 한 사람의 출판 의식과 역량으로 인해 완성된 『신식유서필지』 간행은 조선 후기의 출판문화사 및 기록학적 차원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신식유서필지』는 대부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구태의연한 표현을 삽입하여 문서를 작성했던 구식과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진섭. “儒胥必知에 대하여.” 『國語學』 제27호(1972. 10). 13-26.
김봉좌. “유서필지 판본 연구.” 『書誌學報』 제29호(2005). 137-160.
김영만. “儒胥必知의 吏讀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 1980.

김중천.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6). 275-288. 한국
서지학회.

박형익. “儒胥必知之 吏讀彙編.” 『한국어학』 제20집(2003). 313-326. 한국어학회.

전경목. “19세기 儒胥必知 編刊의 특징과 의의.” 『藏書閣』 제15집(2006).

최범훈. “儒胥必知攷.” 『새국어교육』 제18권 제1호(1974). 152-166.

홍순혁. “儒胥必知 小考 1.” 『한글』 제11권 제3호(1946. 7). 189-195.

홍순혁. “儒胥必知 小考(2).” 『한글』 제12권 제1호(1947. 3). 426-434.

『高宗實錄』.

『新式儒胥必知』.

『儒胥必知』.